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1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이훈기 · 채현일 · 이재관
박지원 · 이재강 · 김 윤
박해철 · 문대림 · 장종태
신정훈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를 이유로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험 ·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응이 지연되거나 형식적 보상
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
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 원칙적으
로 포함하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39조의7제2항제1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정보”를 “구체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9조의7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17의2. 제34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 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7(적용범위) ----- ----- ----- -----제34조제1항 · 제2항 -----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2. 제34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략)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5. (생략)

<신설>

· 신고)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구체적 정보

4.·5.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모든 정보주체에게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3. (생략) ③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7. (생략) <신설>	<u>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제2항----- -----제4항----- ----- -----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비영리법인-----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제34조제2항(제26조제8
---	---

	<u>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u>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4항----- ----- ----- -----
19. ~ 27. (생략)	19.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